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3. . . (제 회)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한화진 (환경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 해당 시설의 종류 및 규모, 배출물질
등 필요한 사항을 제출토록 하고, 환경책임보험에 가입된 시설이 원인이
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에게 손해조
사를 요구하는 등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개
정(법률 제19362호, 2023.4.18. 개정, 2024. 4.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보완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위원 본인 희망 시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 해촉 가능토록 개선함
(안 제6조)
- 나.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 사업자의 제출자료 구체화(안 제8조)
사업자등록정보, 인허가 현황, 시설의 종류·규모, 오염물질 배출량, 취
급물질 등을 제출자료의 종류로 규정함
- 다. 환경부의 손해조사 요구 및 직권조사 요건을 규정(안 제11조의2)
환경부장관이 보험자에게 손해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환경오염피해를

사업자의 자기부담금 기준 이상인 환경오염피해로 규정하고, 보험자의 조사에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에는 환경부장관이 직권으로 손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손해조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실태조사는 환경책임보험사업단에 위탁함(안 제33조)

마. 손해조사, 취약계층 소송지원 시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건강 정보, 범죄경력자료 등 민감정보에 접근 가능토록 함(안 제34조)

바. 보험 가입 사업자가 인·허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보험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부과(안 별표 7)

1차 위반은 경고, 2차 위반은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은 영업정지 3개월, 4차 위반은 영업정지 6개월을 부과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제3항 중 “피해배상금”을 “피해배상금, 추가 피해의 방지 또는 경감 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환경오염피해(토양오염으로 인한 환경오염피해는 제외한다)”를 “환경오염피해”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장에 설치된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2.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인허가 현황
4. 사업장에 설치된 시설의 종류 및 규모
5. 사업장에 설치된 시설의 취급물질 종류 및 취급량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현황 조사표

⑥ 사업자가 제4항에 따라 보장범위에 포함된 시설을 증설하거나 개·보수하는 경우에 기존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해당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의 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손해의 조사 요구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환경부장관이 판단하는 예상피해금액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자기부담금 기준 이상인 환경오염피해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보험자에게 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등(이하 “손해조사등”이라 한다)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보험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해조사등에 착수할 것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절한 경우
2. 보험자가 손해조사등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기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38조의2에 따라 실시한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 안전관리 실태조사 자료의 집적·관리

제25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38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의 시설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사업자,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료

제33조제1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산시스템”을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으로, “업무(제25조제1항제2호의 업무는 제외한다)”를 “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법 제35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제정의 설정·운용, 자금의 차입 및 기탁되는 금품의 접수에 관한 업무

9. 법 제37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제정의 관리·운용 및 환수에 관한 업무

-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법 제38조의2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법 제39조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를 환경책임보험사업단에 위탁한다.

제33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에 관한 업무(법 제39조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 및 제3호)를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에 관한 사무

5. 법 제42조에 따른 취약계층 소송지원에 관한 사무

별표 7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기존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 계약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1항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	---------------	----	-------------	-------------	-------------

별표 8 제2호나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3호”로 한다.

나.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할 때 시설 및 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1호	500	700	1,000
---	------------------	-----	-----	-------

별표 8 제2호마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3호”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부 칙

이 영은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6조(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① ~ ⑦ (생략) ⑧ 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 4. (생략) <u><신설></u> ⑨·⑩ (생략)	제6조(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u> ⑨·⑩ (현행과 같음)
제8조(환경책임보험 및 보장계약의 보장 범위 등)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보장 금액에는 <u>피해배상금</u> , 오염정화비용, 긴급조치비용, 쟁송비용 및 위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의 보장 범위에는 사업장에 설치된 시설로 인한 <u>환경오염피해(토양오염으로 인한 환경오염피해는 제외한다)</u> 가 모두	제8조(환경책임보험 및 보장계약의 보장 범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피해배상금, 추가 피해의 방지 또는 경감 비용</u> ----- -----. ④ ----- ----- ----- ----- <u>환경오염피해</u> ----- -----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사업장에 별표 3 제1호에 따른 시설이 설치·운영되는 경우에는 그 보장 범위에 토양오염으로 인한 환경오염피해도 포함되어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보장 범위에 포함된 시설에 대하여 변경 인·허가(변경 등록·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을 변경 인·허가 사항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을 증설하거나 개·보수하는 경우에는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의 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 . <단서 삭제>

⑤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장에 설치된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2.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인허가 현황
4. 사업장에 설치된 시설의 종류 및 규모
5. 사업장에 설치된 시설의 취급물질 종류 및 취급량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현황 조사표

⑥ 사업자가 제4항에 따라 보장 범위에 포함된 시설을 증설하거나 개·보수하는 경우에 기존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의

<신 설>

변경에 관한 사항은 해당 환경 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의 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의2(손해의 조사 요구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환경부장관이 판단하는 예상피해 금액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자기부담금 기준 이상인 환경오염피해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보험자에게 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등(이하 “손해조사등”이라 한다)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보험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해조사등에 착수할 것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절한 경우
2. 보험자가 손해조사등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

	<u>항을 누락한 경우</u>
	<u>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제24조(구제계정의 관리·운용)	제24조(구제계정의 관리·운용)
① <u>운영기관</u> 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구제계정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다.	① <u>환경부장관</u>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u>운영기관</u> 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구제계정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u>환경부장관</u> ----- -----.
제25조(전산시스템 등의 구축·운영) ① <u>환경부장관</u> 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이하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이라 한다)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5조(전산시스템 등의 구축·운영) ①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환경책임보험 목적물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에 관한 평가</u>	2. <u>법 제38조의2에 따라 실시한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자료의 집적·관리</u>
3. 4. (생략)	3. 4. (현행과 같음)

② <u>환경부장관</u> 이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의 운영을 위하여 인·허가(등록·신고 및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기관, 보험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u>법 제38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의 시설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사업자,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료</u>
4. (생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33조(업무의 위탁) ① <u>환경부장관</u> 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제33조(업무의 위탁) ① -----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8. <u>법 제35조에 따른 환경오염 피해구제계정의 설정·운영, 자금의 차입 및 기탁되는 금품의 접수에 관한 업무</u>
<u><신 설></u>	9. <u>법 제37조에 따른 환경오염 피해구제계정의 관리·운영</u>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연 락 처	(044) 201 - 6811